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규정 삭제〉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54)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이수진 · 김성환 · 곽상언 · 소병훈 · 김용민
김문수 · 한민수 · 주철현 · 이강일 · 이개호 · 이기현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10. 17.

3. 회 부 일 : 2024. 10. 18.

※ 의안번호 : 475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제50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국회의 회의는 항상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정보위원회 특례 규정에 따라 모든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4조의2제1항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u><삭 제></u>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한민국헌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국회 회의공개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회의비공개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¹⁾.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은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²⁾.

한편, 회의 공개에 대해 「국회법」 제71조 및 제75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대한민국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363

반면, 종전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서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음.

이는 국가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동 조항은 지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 6.) 시 정보위원회를 별도의 상임위원회로 신설하면서 함께 마련된 것임.⁴⁾

그런데 지난 2022년 1월 헌법재판소는 ① “헌법 제50조제1항은 번거롭더라도 개별·구체적인 회의마다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실질적인 합의나 회의 내용을 고려한 위원장의 결정을 통해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취지이므로,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②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50조제1항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며 위헌결정⁵⁾을 내렸음.

3)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동시(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시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시(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소관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회의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261).

5)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2020헌바428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법 제71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른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며, 회의 비공개 시에는 위원회 의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6).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위헌결정 이후의 현행 정보위원회 운영방식과 같이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안건은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11호)이 계류 중이므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예컨대, 2024년 9월 26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는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한 후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였음.

<국회회의록_22대_제418회국회(정기회)_제1차 정보위원회_2024. 9. 26. 일부 발췌>

○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가정보원장 등 18명을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 략)

○ 위원장 신성범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략)

○ 위원장 신성범 이제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u>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u>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u>정보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신 설>	1. 「국가정보원법」 제8조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안건
<신 설>	2.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른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건
<신 설>	3. 「국가정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 설>	4. 그 외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② 정보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의(動議)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해당 회의 공개여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참고로, 국가정보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사전 회의가 공개되는데, 이는 안건이 미리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 회의의 비공개 개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16